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 및 「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출연기간 : 2018년 ~ 2022년
○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: 156백만원
- 산정기준 : 목표액('18~'22)에 따라 매년 156백만원씩 출연
※ 성주군 목표액('18~'22) : 780백만원(도 전체 목표액의 1.7%)
※ 성주군 조성총액('93~'22) : 3,960백만원(기조성액 : 3,180백만원)

4.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

○ 신청자격 :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농어업관련기업체, 농협·수협 등 생산자 단체
○ 지원 한도액 : 개인 2억원, 법인 5억원
○ 지원조건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〈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〉
나. 예산조치 : 2018년 당초예산 편성(156백만원)
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6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출연 승인(안)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2017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추가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2022년까지 5년간 7억 8천만원을 출연하여 39억 6천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우리군이 1993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31억 8천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총액 2,078억원의 약 1.5%에 해당하며, 2018년도 출연금은 1억 5천 6백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 목표액 90억원의 1.7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- 지원조건은 연리 1.0%에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,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하여야 하며 개인은 2억, 농업 법인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2008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은 총 67가구에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, 2018년도 신청농가는 3가구에 4억 5천 5백만원입니다.

○ 검토결과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추진되는 기금사업으로 농촌 소득증대·농업시설의 구조개선·신기술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원이므로 본 기금출연(안)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